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4. 2. 4.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경위

2004년 2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박지위 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장일치로 본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03.12.18 대통령령 제18161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0,000원에서 월 9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을 신설함(안 제2조제2항)

나.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와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함(별표1, 별표2)

4.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2003.7.18 법률 제6927호) 제32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2003.12.18 대통령령 제18161호) 제15조

5.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6. 예산조치 : 필요(집행기관의 의견 : 조례개정이 가능함)

기타사항 : 신·구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수집·연구”를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매월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의정활동비는 월550,000원으로 한다”를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200,000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1중 숙박비(10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10야당)
46,000
25,000

별표2중 숙박비(10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10야당)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월550,000원으로 한다.</p> <p>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③(생략)</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수집·연구와 보조활동————— —————매월 의정활동비—————</p> <p>②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200,000원으로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1항관련)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1항관련)
숙박비(10야당)	숙박비(10야당)
(생략) 41,000 (생략)	(현행과 같음) 46,000 (현행과 같음)
22,000	25,000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2항관련)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2항관련)
숙박비 (10야당)	숙박비 (10야당)
(생략)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생략)	(현행과 같음)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현행과 같음)
가등급 132 나등급 86 다등급 64 라등급 56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